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26. 08.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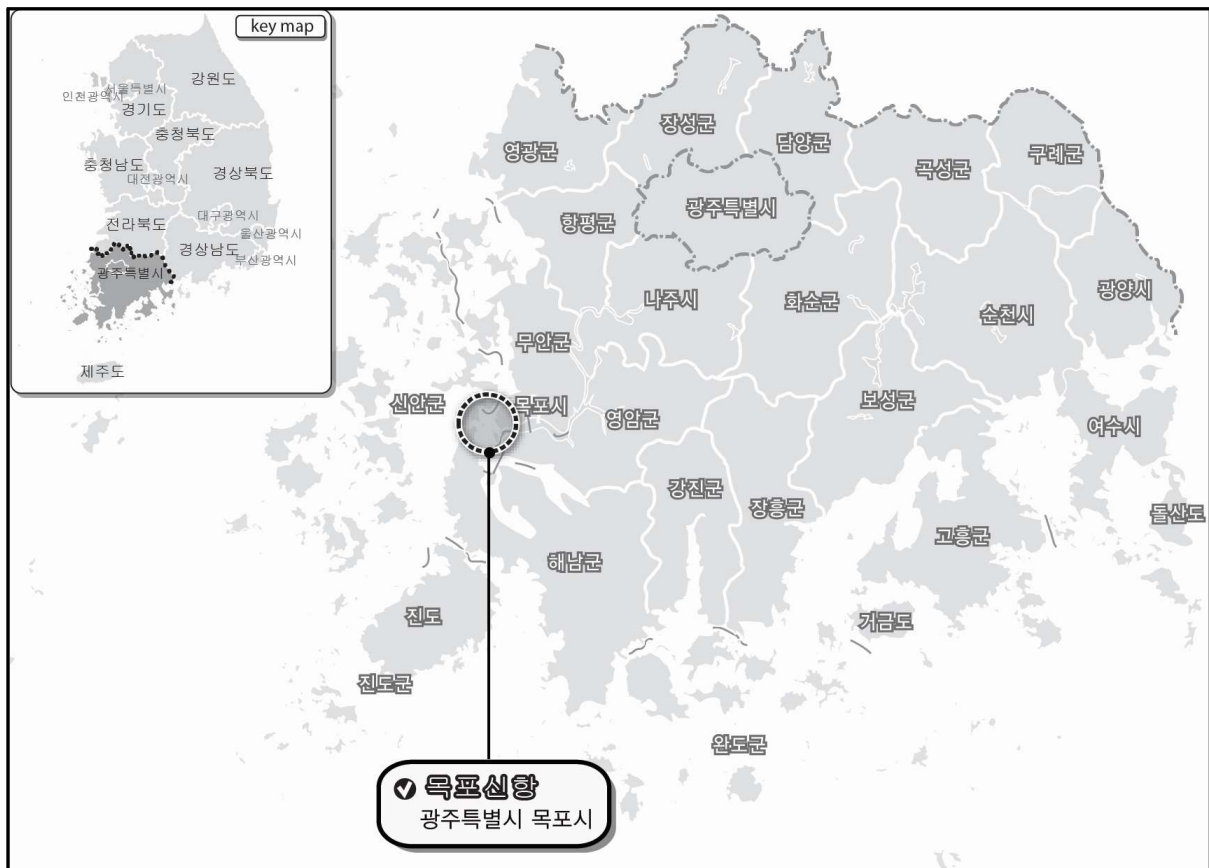
목 차

제1장 사업의 개요	1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1.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4
1.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5
1.4 사업의 내용	6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7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7
2.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7
제3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0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10
3.2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	12
제4장 대안의 설정	13
4.1 대안의 설정	13
4.2 대안별 비교·검토	14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8
5.1 평가항목의 선정	18
5.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	20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25
6.1 지역주민 의견수렴	25
6.2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25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26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26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26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27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목포신항은 서남권 경제중심 물류 거점항만으로 기존 조성된 준설토 투기장의 수토 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향후 인근 항만 및 어항 등의 유지준설,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준설토를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준설토 투기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 따라서,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투기 완료 시점에 맞춰 신규 투기장을 조성하여 향후 발생 준설토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
- 금회 환경영향평가는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환경요인 파악 및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공사 시와 운영 시 발생하는 악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본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1) 사업지구 위치도(광역)



(그림 2) 사업지구 위치도(지형도)



(그림 3) 사업지구 위치도(위성사진)

1.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가. 추진경위

- 1987. 10. 16 : 목포항으로 명명
- 1995. 04. : 제1차(1995~2001)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고시
- 1997. 04. 01 :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 1997. 08. 09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정·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1997-76호)
- 1999. 04. : 목포북항 무역항(목포항) 편입(항만법시행령 개정)
- 2001. 12. : 제2차(2002~2011)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해양수산부고시 제2001-135호)
- 2006. 12. 27 : 제2차(2006~2011)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06-91호)
- 2007. 07. 10 : 신항만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07-41호)
- 2011. 06. 29 : 제3차(2011~2020) 전국 항만기본계획(무역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국토환경평가과-1819)
- 2011. 07. 29 : 제3차(2011~2020) 항만기본계획 고(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02호)
- 2013. 03. 20 :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3-155호)
- 2018. 04. 13 :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34호)
- 2018. 12. 14 :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49호)
- 2019. 07. 24 :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22호)
- 2019. 08. 14 :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26호)
- 2020. 12. 30 : 제4차(2020~2030) 항만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0-231호)
- 2023. 12. 22 :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81호)
- 2026. 06. 16 :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026. 07. 20 : 목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6-80호)
- 2026. 07. 2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2506)

※ 심의기간 : 2026. 07. 22~2026. 08. 06(12일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향후 추진계획

-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
-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 실시계획 고시
- 사업시행

1.3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 본 사업은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호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금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 금회 사업규모는 외곽시설 1,206m로 외곽시설 길이가 300m 이상에 해당되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4. 항만의 건설사업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u>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u>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2)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u>「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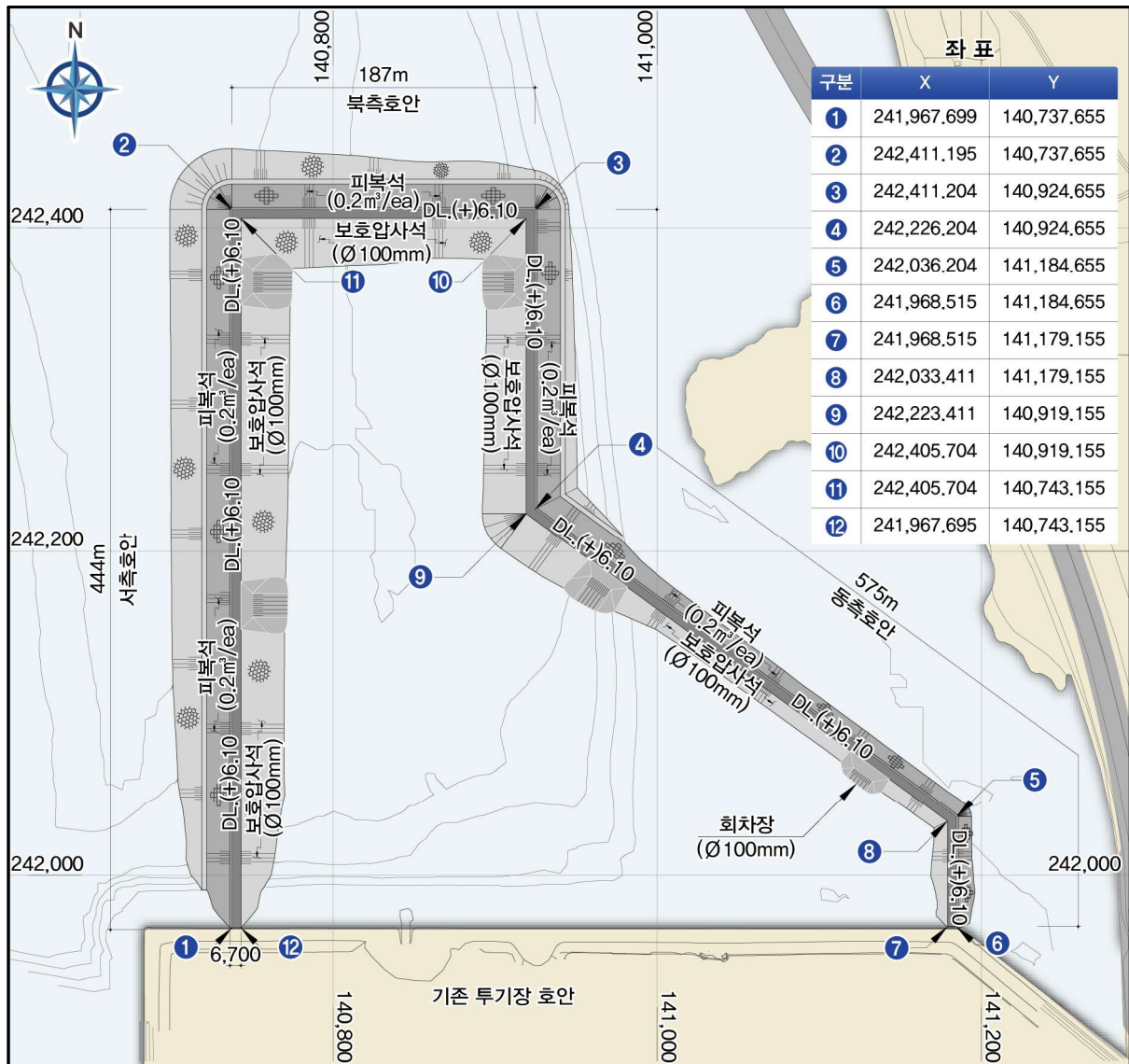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 [별표 3]

<표 2>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검토결과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서측호안	북측호안	동측호안	합 계	
외곽시설(호안)	444m	187m	575m	1,206m	-

1.4 사업의 내용

- 가. 사 업 명 :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 다. 사 업 시 행 자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라. 승 인 기 관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마. 협 의 기 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바. 사 업 기 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
- 사. 사 업 비 : 91,533백만원
- 아. 사 업 규 모 : 외곽시설(호안) 1,206m



(그림 4) 계획평면도

제2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2.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분야 등 제반 환경상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을 위해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입지여건, 사업의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요인, 유사사업의 사례 등을 충분히 조사·파악하고, 공사시 일시적인 환경영향과 운영시 지속적인 환경영향으로 대별하여 주요 평가항목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가. 시간적 범위

- 공사단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
- 운영단계 : 공사완료 후 5년

나. 공간적 범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일원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지역(항목별 검토)

다. 주요 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의 범위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은 사업특성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에 따라 항목별로 선정하였다.

2.2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

- 본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다음 <표 3>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및 예측범위를 결정하였다.

<표 3>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분 야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평가대상 지역	비 고
자연생태 환경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자산 영향여부 검토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대기환경	기 상	○대기질 예측·분석의 기초자료 수집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표 3> 계 속

분 야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내용	평가대상 지역	비 고
대기환경	대기질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지구 경계기준 반경 1.5km 이내	공사시
	악취	○ 운영시 준설토 투기에 따른 악취 발생	사업지구 경계기준 반경 1.5km 이내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수환경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력, 현장사무소 등 오수 발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저질 해양동·식물상)	○ 투기장 조성에 따른 해수유동 및 침·퇴적 변화 등에 의한 영향 ○ 공사시 부유사 등의 확산으로 인한 해양 수질 변화 ○ 공사시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해양동· 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사업지구 경계기준 반경 3.0km 이내	공사시 운영시
토지환경	토지이용	○ 투기장 조성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사업지구	운영시
	지형·지질	○ 투기장 조성에 따른 지형 및 해안선 변화 ○ 공사시 재료원 수급	사업지구	공사시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력 및 장비가동에 따른 폐기물 발생	사업지구	공사시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사업지구 경계기준 반경 1.5km 이내	공사시
	경 관	○ 투기장 조성에 따른 경관변화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	산 업	○ 투기정 조성으로 인한 인근 어업권 영향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공사시



(그림 5)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금회 사업의 특성 및 토지이용,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환경현황, 본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

<표 4> 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항 목		환경보전목표	설정사유	비고
대기환경 (대기질)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환경기준(대기) - 대상항목 : PM-10, PM-2.5, NO ₂	○ 대기환경기준 부합 여부	○ 공사시
수 환 경	수 질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대상항목 : BOD, SS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적정 처리 여부 (현장사무소 설치 시)	○ 공사시
	해양 환경	○ 「해양환경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 - 해수수질, 해저퇴적물, 해역별 해양환경기준	○ 해양환경기준 부합 여부	○ 공사시 ○ 운영시
생활환경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생활소음 규제기준, 생활진동 규제기준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부합 여부	○ 공사시

- 사업의 특성 및 환경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시 환경기준 및 규제기준을 적용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5> 환경보전목표 설정

항 목	환경보전목표			
대기환경 (대기질)	○ 사업시행 시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구 분	PM-10	PM-2.5	NO ₂
	환경목표기준 (24시간)	100 μ g/m ³ 이하	35 μ g/m ³ 이하	0.06ppm 이하

<표 5> 계 속

항 목		환경보전목표									
수 환 경	수질	○ 공사시 현장사무소 설치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구 분	1일 처리용량		지역	항 목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처리 시설	50㎥ 미만	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mg/L)				20 이하		
	부유물질(mg/L)				20 이하						
	해양 환경	○ 공사시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해양환경영향이 예상되므로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해양생태계 보호기준(단위 : µg/L)									
		중금속류	Cu	Pb	Zn	As	Cd	Cr ⁶⁺	Hg	Ni	
		단기기준*	3.0	7.6	34	9.4	19	200	1.8	11	
		장기기준**	1.2	1.6	11	3.4	2.2	2.8	1.0	1.8	
		* : 단기기준 : 1회성 관측값과 비교 적용 ** : 장기기준 : 연간평균값(최소 사계절 동안 조사 자료)과 비교 적용									
		- 해저퇴적물 기준(단위 : mg/kg)									
해양환경기준	As	Cd	Cr	Cu	Hg	Ni	Pb	Zn			
주의기준	14.5	0.75	116	20.6	0.11	47.2	44.0	68.4			
관리기준	75.5	2.72	181	64.4	0.62	80.5	119	157			
생활환경 (소음·진동)	○ 사업시행 시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대상지역	소음원	소음(dB(A))		진동(dB(V))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공사장	65 이하	50 이하	65 이하	60 이하					

3.2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

-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은 사업지구 인근 문헌자료(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6.05, 해양수산부)의 현지조사 결과와 환경보전목표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검토결과, 해양수질 항목의 총대장균군, 소음·진동의 야간 소음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환경보전목표의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를 반영하여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표 6> 문헌조사 결과와 환경보전목표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 검토

항 목		단위	현황조사 결과	환경기준 (목표기준)	검토결과
대기환경 (대기질)	PM-10	μg/m ³	9.9~43.9	100	목표기준 만족
	PM-2.5	μg/m ³	5.7~23.3	35	
	NO ₂	ppm	0.001~0.016	0.06	
수 환 경	수 질	BOD	mg/L	-	오수처리시설 설치 전으로 타당성 분석 제외
		SS	mg/L	-	
	해양 수질 (표·저층)	pH	-	7.64~8.24	총대장균군 항목 목표기준 초과, 그 외 목표기준 만족
		총대장균군	균수/100mL	불검출~1,500	
		용매추출유분	μg/L	불검출~1.020	
		Cu	μg/L	0.615~1.177	
		Pb	μg/L	0.020~0.100	
		Zn	μg/L	2.336~10.148	
		As	μg/L	1.194~1.584	
		Cd	μg/L	0.013~0.047	
		Cr ⁶⁺	μg/L	0.104~0.217	
		Hg	μg/L	불검출~0.002	
		Ni	μg/L	0.332~0.916	
	해저 퇴적물	As	mg/kg	6.686~11.907	목표기준 만족
		Cd	mg/kg	0.119~0.197	
		Cr	mg/kg	51.144~84.781	
		Cu	mg/kg	6.937~9.307	
		Hg	mg/kg	0.0102~0.0218	
		Ni	mg/kg	22.206~38.746	
		Pb	mg/kg	17.380~27.575	
		Zn	mg/kg	45.397~48.592	
생활환경 (소음·진동)	주간 소음도	dB(A)	47~57	65 이하	야간 소음도 항목 목표기준 초과, 그 외 목표기준 만족
	야간 소음도	dB(A)	41~56	50 이하	
	주간 진동도	dB(V)	11~28	65 이하	
	야간 진동도	dB(V)	10~22	60 이하	

주) 해저퇴적물 중 Cu, Zn은 입도보정한 값임

자료 :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사업 환경영향평가서, 2026.05, 해양수산부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설정

- 본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대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0호)」 제7조의3에 따라 대안의 종류 및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금회 대안은 수단·방법과 사업규모 대안을 선정·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였다.

<표 7> 대안의 종류 및 방법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유무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사업규모	○ 사업규모(면적, 길이, 용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시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 조정안에 대해 제시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 (예: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표 8> 대안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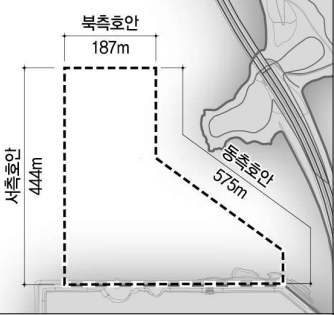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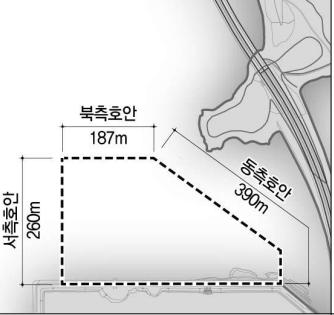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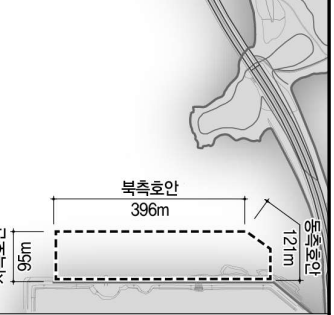
대안의 종류	선정기준	대안 선정내용
사업규모	호안 연장, 투기장 면적 및 수토용량	○ 제1안 : 호안 1,206m 투기장 면적 125,500㎡, 수토용량 : 1,386,000㎡ ○ 제2안 : 호안 836m 투기장 면적 90,929㎡, 수토용량 : 890,000㎡ ○ 제3안 : 호안 628m 투기장 면적 42,026㎡, 수토용량 : 272,000㎡
수단·방법	호안 구조형식	○ 제1안 : 사석경사제 ○ 제2안 : 사석경사제(상치콘크리트) ○ 제3안 : 블록식 혼성제
	기초처리공법	○ 제1안 : 강제치환 ○ 제2안 : 심층혼합처리공법 ○ 제3안 : 고압분사공법
기타	여수토 구조형식	○ 제1안 : 맨홀식 ○ 제2안 : 관로 매설식

4.2 대안별 비교 · 검토

가. 사업규모

- 인근 신규 부두 개발 및 향후 유지준설에 따른 준설토 발생량 수용 가능성 및 신항 항만 시설과 연계한 장래부지 활용 여부 등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제1안을 선정하였다.

<표 9> 사업규모 검토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평면도			
시설 규모	○ 호안 : 1,206m ○ 투기장 면적 : 125,500㎡ ○ 수토용량 : 1,386,000㎥	○ 호안 : 836m ○ 투기장 면적 : 90,929㎡ ○ 수토용량 : 890,000㎥	○ 호안 : 628m ○ 투기장 면적 : 42,026㎡ ○ 수토용량 : 272,000㎥
장 점	○ 인근 신규부두 개발(철재·잡화 부두 등) 및 유지준설 등에 따른 발생 준설량 수용 가능 ○ 신항 항만시설과 연계한 장래 부지 활용 가능	○ 인근 신규부두 개발(철재·잡화 부두 등)에 따른 발생 준설량을 수용하는 범위로 사업 규모 최적화 ○ 기본계획에 따른 투기장 점진적 확장 가능	○ 인근 신규부두 중 철재부두 발생 준설량만 수용하여 공사비 최소화 ○ 지자체 요청(철재부두를 해상 풍력 전진기지부두로 사용) 우선순위 충족
단 점	○ 투기장 구성에 따른 공사비 과다 ○ 공사규모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	○ 신규부두 개발 준설량은 수용 가능하나 기타 장기발생 유지 준설 발생량 수용 불가 ○ 투기 완료 후 부지 활용도 제한 ○ 투기장 점진적 확장시 추가 인허가 절차 필요	○ 수토량 부족으로 당초 사업 목적 및 기대효과 저하 ○ 철재부두 제외 타 인근 부두 개발 지연 또는 중단 가능성 ○ 배후부지 활용 등 항만 기능 시너지 효과 극히 제한적
공사비	약 915억원	약 606억원	약 494억원
선 정	◎		
선정사유	○ 인근 신규 부두 개발 준설토 및 향후 유지준설 준설토 발생량을 안정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항만시설과 연계한 배후부지를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 가능한 제1안 선정		

나. 수단·방법 대안

1) 호안 구조형식

- 호안 단면구조 형식은 사석경사제, 사석경사제(상치콘크리트), 블록식 혼성제 총 3개의 비교안을 구상하였으며,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제1안(사석경사제)으로 선정하였다.

<표 10> 호안 구조형식 대안검토

구 분	대안 제1안 (사석경사제)	대안 제2안 (사석경사제(상치콘크리트))	대안 제3안 (블록식 혼성제)
단면도			
개 요	- 사석으로 제체를 형성 - 제체전면 소단 및 피복석거치로 파랑에너지 차단 - 마루높이 : DL.(+)6.10m	- 사석으로 제체를 형성 - 상치콘크리트 타설 - 제체전면 소단 및 피복석거치로 파랑에너지 차단 - 마루높이 : DL.(+)6.10m	- 사석으로 기초 제체 형성 - 블록 거치 및 상치콘크리트 타설 - 제체전면 소단 및 피복석거치로 파랑에너지 차단 - 콘크리트블록 제작 - 마루높이 : DL.(+)6.10m
특 성	- 시공성 및 장비주행성 우수 - 단순공종 및 시공실적 다수 - 지반침하에 대한 순응성 양호 - 파랑에너지 분산효과 양호 - 제체하부폭 증대로 기초처리비용 증가 - 대규모 사석소요 대비 재료원 확보 필요	- 시공성 및 장비주행성 다소 불리 - 상치콘크리트 추가로 사석량 감소 - 침하 발생 시 안정성 취약 - 파랑에너지 분산효과 양호 - 상치콘크리트 유지관리 필요 - 대규모 사석소요 대비 재료원 확보 필요	- 해상공중에 따른 시공성 다소 불리 - 블록 제작장 필요 및 공종 복잡 - 침하 발생 시 기초 안정성 다소 불리 - 파랑에너지 분산효과 불리 - 직립식 구조물로 기초처리공법 제한 - 사석소요량이 적어 재료원 확보 용이
공사비	915억원	910억원	1,218억원
선 정	◎		
선정사유	시공실적, 지반침하에 대한 순응성 및 파랑에너지 분산효과가 양호한 제1안 선정		

2) 기초처리공법

- 구조물 하부 연약지반층에 대한 기초처리공법으로 강제치환, 심층혼합처리공법, 고압분사공법 총 3개의 비교안을 구상하였으며, 각 공법에 대한 시공실적, 개량효과 및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1안(강제치환)으로 선정하였다.

<표 11> 기초처리공법 대안검토

구 분	대안 제1안 (강제치환)	대안 제2안 (심층혼합처리공법)	대안 제3안 (고압분사공법)
개념도			
개 요	○ 연약한 원지반상에 사석을 투하하여 사석의 제체 하중에 의해 기초지반을 강제 배제시켜 치환하는 공법	○ 원지반 연약점토층 내에 석회나 시멘트 등의 지반 개량제를 혼합·교반하여 주상의 개량체를 조성하는 공법	○ 선단노즐에서 Air와 초고압수를 분사하여 원지반을 절삭하여 배출함과 동시에 몰탈 충전으로 구근형성
특 성	○ 공종이 단순하고 시공성 양호 ○ 지반개량 효과 면에서 타공법에 비해 경제적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시공 실적이 풍부하며 인근 시공 사례 다수 ○ 다량의 석재가 소요되며 이론상 완전 치환이 가능하나 시공상 미치환 구간이 발생할 수 있음	○ 목표심도까지 정량적 지반개량 및 안정해석 가능 ○ 시멘트교반에 의한 충분한 강성 확보 ○ 연약층 토질특성 및 지지층 심도변화에 대한 대처 용이 ○ 부상토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 홀수 부족에 따른 현장 적용 가능성 저하	○ 개량층 상부 사석 혼재시 시공 가능 ○ 부상토 발생으로 부상토 제거 및 처리 공종필요 ○ 대구경 고강도의 개량체 형성 가능 ○ 원지반 절삭 후 몰탈충진으로 개량체 강도 신뢰성 양호 ○ 부상토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 경제성 불리
경제성	127억원	590억원	645억원
선 정	◎		
선정사유	○ 지반개량 효과가 타 공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부상토 발생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적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1안 선정		

다. 기타(여수토 구조형식)

- 여수토 구조형식은 토립자 유출방지 및 해양오염 방지 효과가 유리하고, 투기장 내 수위 관리에 적합한 1안(맨홀식)으로 선정하였다.

<표 12> 여수토 구조형식

구 분	대안 제1안 (맨홀식)	대안 제2안 (관로 매설식)
평면도		
개 요	○ 준설토 투기 수위에 따라 여수고를 조절하여 맨홀 내 도수관을 통해 여수 배출	○ 투기장 호안 상단 일부를 얇게 파고 관로를 매설하여 도수관을 통해 여수 배출
특 성	○ 여수토 접근 유속이 느려 토립자 유출방지에 유리 ○ 해양오염 방지효과 유리 ○ 공사비 보통, 장기적인 유지관리 필요	○ 관로를 통해 토립자가 직접 방출되므로 오염 관리 필요 ○ 해양오염 방지효과 불리 ○ 조위차가 클 경우 역류방지에 불리
선 정	◎	
선정사유	○ 월류관이 토립자 유출을 방지하여 준설토에 의한 해양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수위 관리에 적합한 제1안 선정	

제5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선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 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준하여 설정하였다.

<표 13> 평가항목의 선정

구 분	평 가 항 목	설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중점 평가 항목 (11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시 사업지구 주변 자연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발생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대기질	○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발생	○ 오염물질 확산범위 영향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악취	○ 운영시 준설토 투기에 따른 악취 발생	○ 사업지구 주변 악취 현황 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수 질	○ 공사시 투입인력에 따른 오수 발생	○ 발생오수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해양환경 (해양물리, 해양수질, 해저퇴적물 해양동·식물상)	○ 공사시 부유사확산 발생 ○ 운영시 외곽시설(호안) 설치로 인한 해수유동, 침·퇴적 변화, 해수교환율 등의 발생	○ 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 등을 통한 부유사 확산 농도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토지이용	○ 투기장 구성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투기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
	지형·지질	○ 투기장 구성에 따른 해안선 변화 ○ 재료원 확보	○ 지형·지질 변화 정도 및 영향예측 ○ 재료원 공급대책

<표 13> 계 속

구 분	평 가 항 목	설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중점 평가 항목 (11개)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장비 및 투입인력으로 폐기물 발생	○유사사례,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공사시 장비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발생	○장비별 소음·진동 특성, 거리감쇠에 의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경 관	○투기장 구성에 따른 해양경관 변화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특성 조사 ○사업시행 후 경관변화 예측 및 분석
일반 평가 항목 (2개)	기 상	○대기오염물질 확산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목포기상관측소 관측자료 분석
	산 업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부유사확산에 따른 인근 어업권에 미치는 영향
제외 항목 (8개)	육상동·식물상	○사업지구는 공유수면에 위치하여 육상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
	토 양	○사업지구는 공유수면에 위치하여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위 락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락 기능 변화 없음	-
	위생·공중보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요인 없음	-
	전파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요인 없음	-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요인 없음	-
	인 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요인 없음	-
	주 거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발요인 없음	-

5.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선정 한 평가항목별 조사·예측 및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황조사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병행할 계획임
- 예측 및 평가방법은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 및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평가할 계획임

<표 14>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및 평가방법

구분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평가방법
자연 생태 환경	자연환경 자산	○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자연환경자산의 분포 및 영향예측
대기 환경	기 상	○ 조사내용 : 사업지구의 기상 현황 (기온, 강수량, 풍향·풍속 등) ○ 조사방법 : 인근 기상관측소 자료를 분석·정리	○ 목포기상관측소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대기현황, 주변지역 대기오염원 조사 ○ 조사항목 : PM-10, PM-2.5, SO₂, NO₂, CO, O₃, Pb, 벤젠(총 8개 항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횟수 : 4회	○ 공사시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따른 주변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분석 ○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공사시 토랑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영향예측(AERMOD)
	악 취	○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악취현황, 주변지역 악취배출시설 조사 ○ 조사항목 : 복합악취 ○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횟수 : 4회	○ 사업지구 주변 복합악취 현황농도 조사 및 악취배출시설 현황 조사
	온실가스	○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공사시 장비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표 14> 계 속

구분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평가방법
수 환경	수 질	○ 조사내용 : 사업지구 주변 수계현황, 사업지구 내 오수처리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공사시 오수발생량 예측
	해양환경	○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현황 ○ 조사항목 - 해양수질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군수, T-N, T-P, Cr⁶⁺, As, Cd, Pb, Zn, Cu, Fe, Mn, Al, Hg, CN, Ni, 벤젠, 페놀, PCBs, 유기인, ABS, Chl-a, DIN, DIP,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저층 DO포화도(총 33개 항목)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화환원성화합물, COD, TOC, As, Cd, Cr, Cu, CN, Hg, Ni, Pb, Zn, Al, Fe, Li, Co, PCBs, PAHs, 유기인 (총 22개 항목) - 해양동·식물상 : 식물플랑크톤(표·저층), 동물플랑크톤,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조간대 동물 및 식물, 해양보호생물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조사지점 : 해양수질 6개 정점(표·저층) 해양퇴적물 6개 정점 해양동·식물상 6개 정점 (조간대 4개 정점, 투기장 구역 내 해양보호생물 포함) ○ 조사횟수 : 4회	○ 사업지구 주변해역 해양환경 현황 분석 결과 검토 ○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 예측 - 해수유동 수치모형실험 - 퇴적물이동 수치모형실험 - 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 - 해수교환율 수치모형실험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해역의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표 14> 계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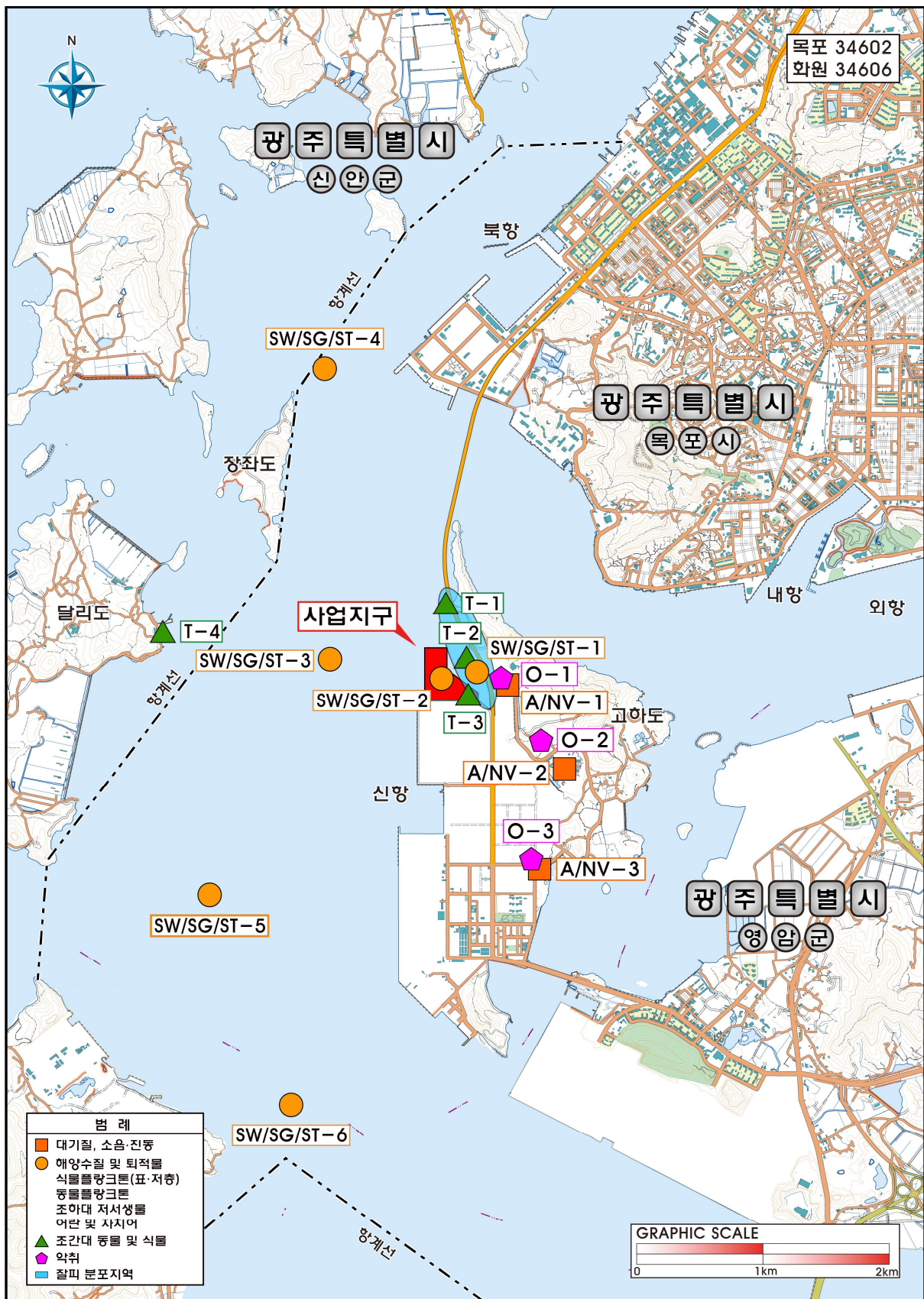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현황조사	영향예측·평가방법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조사내용 : 용도별·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예측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지형·지질	○ 조사내용 : 사업지구의 지형형상, 지질상황, 안정성 등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내 ○ 조사방법 : 문헌조사 및 지반조사 자료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및 해안선 변화 예측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공산시 폐기물 발생량 산정
생활 환경	소음·진동	○ 조사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소음현황, 주변지역 소음발생원 조사 ○ 조사항목 : 주·야간 소음·진동도 ○ 조사범위 : 사업지구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 조사지점 : 3개 지점 ○ 조사횟수 : 4회	○ 공산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영향 예측 ○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적용
	경 관	○ 조사내용 : 경관 현황조사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및 원경·중경·근경의 주요 조망점 선정(현지조사)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사회 · 경제 환경	산 업	○ 조사내용 : 어업권 및 산업 현황 ○ 조사범위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을 통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어업권 영향 예측

가. 현지조사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사횟수는 4회를 계획하였다.

<표 15>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계획

구 분		조사항목	지점수	횟수
대기환경	대기질	○PM-10, PM-2.5, SO ₂ , NO ₂ , CO, O ₃ , Pb, 벤젠 (총 8개 항목)	3개 지점	4회
	악취	○복합악취	3개 지점	4회
수환경	해양수질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PM, 총대장균 군수, T-N, T-P, Cr ⁶⁺ , As, Cd, Pb, Zn, Cu, Fe, Mn, Al, Hg, CN, Ni, 벤젠, 페놀, PCBs, 유기인, ABS, Chl-a, DIN, DIP,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저층DO포화도(총 33개 항목)	6개 정점 (표·저층)	4회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산화발성화합물, COD, TOC, As, Cd, Cr, Cu, CN, Hg, Ni, Pb, Zn, Al, Fe, Li, Co, PCBs, PAHs, 유기인(총 22개 항목)	6개 정점	4회
	해양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Chl-a 포함)	6개 정점 (표·저층)	4회
		○동물플랑크톤	6개 정점	
		○조하대 저서생물	6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6개 정점	
		○조간대 동물 및 식물	4개 정점	
		○해양보호생물 - 투기장 구역내 정밀조사 포함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해산어류	문헌조사	
생활환경	소음·진동	○소음 : 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 : 주간 2회, 야간 1회	3개 지점	4회



(그림 6) 조사지점도(현지조사)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6.1 지역주민 의견수렴

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사업지구가 위치한 「목포시」 홈페이지, 신문공고(일간신문, 지역신문 등)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 등에 공람할 계획이다.

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목포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초안 요약문을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주관사인 「목포시」와 「영암군」 및 「신안군」 등 관계 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람장소는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는 공람기간 중 1회(설명회 개최공고 7일 후)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장소는 추후 「목포시」와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며, 공청회는 관련법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할 계획이다.

6.2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의견수렴을 위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승인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목포시(주관 지자체), 영암군 및 신안군(관련 지자체)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계획 등을 결정하였다.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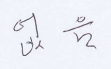
- 주관부서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 심의기간 : 2026년 07월 22일~2026년 08월 06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내용 :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
- 심의위원

구 분	소속 / 부서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과 장	최 ○	승인기관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	주무관	최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계 장	김 ○ ○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주)연안항만엔지니어링	전 무	김 ○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연구원 기후에너지평가실	선임연구위원	김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	과 장	정 ○ ○	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고하 어촌계	어촌계장	강 ○ ○	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의결서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 □ 총 결 의 건 ○ 동 사업은 목포항내의 기 조성된 투기장의 수토용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신규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임 ○ 평가서 작성 시,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공간적 범위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사업지구와 간접적인 영향권인 주변 지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대상지역 설정 - 사업지구 인근 어업권 및 대규모 개발현황(수역영향 등 고려)을 철저히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누적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동 계획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 대안(3개 이상)을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사업지구 주변 해역에 어장(임시 허가어업 포함)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어업권에 대한 영향을 해양 동·식물상에 포함 - 준설도 및 토사 등 매립재료의 소요량 판단 및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준설토를 활용할 경우 주기적인 해충방제 등 저감방안 강구	- 필요시 공사구간 주변 해역에 대한 선박의 동향안전성 확보 및 해상 오염사고 방제대책 제시 - 준설도 투기 후 조성된 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방안 검토 - 준설에 따른 통수단면 확대, 해저지형 변화 등에 따른 해양지질, 해양물리(조류, 저서, 침적 등) 변화와 이에 따른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항목별 조사(해수, 서기 방법 등) 예측·평가 방법의 적정성 - 현황조사지점 선정 시 기 환경영향평가 시 조사지점,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 예측지점,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 등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각 항목별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해양환경(수질, 저질, 동·식물상) 조사지점은 사업물량, 방법 및 사업구간 등 여건을 고려하여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평가대상지역 주변과의 비교 등을 위해 조사지역 및 지점수를 충분히 설정해야 하며, 특히 해양지질 및 저서생물은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지점을 간격 설정 - 해양환경에 대해서는 해양조력·해양생태·해양생물·해양생물·해양생물 등을 실시하여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사범위를 설정하여 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해역별 수질기준 등급을 고려한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강구 - 해양 동·식물상 현황조사 시 분류군별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현장조사계획을 수립 - 해양수질영향 및 해수 유동변화를 조사하여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저감대책·조력 및 조력·공사 시 및 야후에도 오염방지막 설치, 준설도 해양 유출방지막, 조력상승시 침수배방 대책 등을 수립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다양한 매체·경로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2026. 8. 5. 심의위원 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 총 결 의 건 ○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결로 본 심의의결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이에 따른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을 비교·제시하고 선정된 공법에 대한 선정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고, 해양환경 영향을 중점 검토하여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2026. 7. 4.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 총 결 의 건 ○ 본 사업은 준설도 투기장 조성을 위한 호안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계획평면도에(p.8) 제시된 서측호안의 길이가 최근 해안수상부에 고시(2026.7.16.)된 평면과 서로 상이함. - 원인을 파악하고, 평가대상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여야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및 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해양환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p.121)에 제시된 “투기장 조성으로 인하여 내측의 해수교환율의 검토”하기 위한 내측수역의 해수교환율 검토지역을 선정하여 제시 ○ 경관(p.97) : 사업지구 인근인 고하도의 대표관광지역인 고하도전망대를 경관예측 주요조망점에 포함하여 사업전후의 경관변화를 검토하여 제시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 없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승인기관)	(주)연안항만엔지니어링(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해당 없음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운영시 투기장의 장래 투기계획을 제시 ○ 심의의견 및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26. 7. 29.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 총괄 의견 ○ 기존 준설도 투기장의 투기 완료 시점에 맞추어 신규 투기장을 조성하려고 함. 기존 투기장 호안 동측에는 고하도와 인접하여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며 연결통로를 통하여 해수가 소통됨. 추가적으로 준설도 투기장이 고하도 해안을 따라 조성될 경우에는 고하도와 인접한 갯벌지역에 해수 유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수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준설도 투기장 조성으로 인해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는 해역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기존 투기장 호안 동측에는 고하도와 인접하여 갯벌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 해수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다수의 대안 설정하고 비교평가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해양동·식물상: 준설도 투기장 조성 지점, 준설도 투기장 조성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는 지점, 대조구 지점으로 구분하여 2개월 이상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해양동식물상 조사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영향 범위는 최대한 고려)을 포함 - 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개별 해양보호생물종의 서식활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호안 조성 전·후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 - 문헌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저서오염지수 등을 활용하여 분석
(주)연안항만엔지니어링(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연구원(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 해양수질 및 지질: 준설도 투기장 조성 지점, 준설도 투기장 조성으로 인해 해양오염이 가중되는 지점, 대조구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함 - 해수교환율이 저하되는 지점을 선정 - 수질평가지수, 농축계수, 농집지수 등을 활용하여 현황 분석 -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 ○ 해양물리 - 수위 및 유속 검증은 계절별로 수행 - 부유사 확산은 관측자료 등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어수토 배출에 따른 영향예측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마련 ○ 침퇴적 실험은 기존 관측자료 등을 활용하여 검증 후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해충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 되지 않음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해당 되지 않음 2026. 8. 6.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도 투기장 건설) ☐ 총괄 의견 ○ 의견 없음. ☐ 심 의 의 건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의견 없음.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의견 없음. 2026. 7. 24. 심의위원 정 
한국환경연구원(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목포시청(지방자치단체 추천 소속 공무원)

[별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 총괄 의견 ○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2026. 8. 6.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목포신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 총괄 의견 ○ 기존 준설토 투기장 용량 부족에 따른 신규 조성사업으로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적정하게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성실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저감 방안 등을 마련 바람. ☐ 심의 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히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준설토 투기장의 부유사 등으로 주변 해역에 미칠 해양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범위를 확대하고 검토하기 바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 영향 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람.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인근 주민과 어업종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 바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약식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일반적인 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종합 검토 바람. 6. 심층평가 대상 여부 ○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7.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사업 특성 고려해 해양수질, 생태계, 어업활동 등의 항목 중점 검토바람. 2026. 7. 31. 심의위원 
고하 어촌계(지방자치단체 거주 주민대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